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1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1호(2012.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5호(2017.2.23.)로 결정·고시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내역

구 분	구역의 명칭 (정비사업방식)	위 치	면 적(㎡)	시행자	해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기한)
기정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60,653	조합	2018.7.23.
변경 (연장)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60,653	조합	2020.7.23.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토지 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시 주거사업과(02-2133-7222), 송파구 주거재생과(02-2147-2897)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2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제6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장